

#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지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910
----------	-------

제출년월일 : 2025. 10. 15.

발 의 자 : 이지화, 박은정, 한갑수,  
김진숙, 유재수, 김유숙,  
송바우나 의원 (7인)

## 1. 제안이유

-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 관련 질병의 긴 잠복기를 고려할 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 이에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안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제2조)
-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
- 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조)
-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6조~제7조)

## 3. 제정조례안

: 붙임 1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2
5. 예산수반사항 : 붙임 3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6. 부서검토의견 : 붙임 4

## **【붙임 1】 제정조례안**

### **안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안산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3. “석면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
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안산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석면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의 석면조사)** ① 시장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석면조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조사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

준을 지켜야 한다.

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
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
3.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
4.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처리 등 지원)** ① 시장은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미 비용을 지원받은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속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 원	이지화 의원 대표발의